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92 발의연월일: 2021. 10. 27.

발 의 자:이해식 • 서영교 • 백혜련

한준호 · 오영환 · 김수흥

이형석 • 안규백 • 정일영

조승래 · 천준호 · 노웅래

의원(12인)

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농협·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제도는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이며,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구매·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25% 감면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.

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리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며,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사업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·판매사업과 동일하게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통한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어업 부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

세제지원이 필요함.

이에 2021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, 과세형평성 제고를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·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(안 제10조제1항, 제14조제1항).

#### 주요내용

- 가.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 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0조제1항).
- 나.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·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25% 감면 제도를 적용함(안 제1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업협동조합중앙회"를 "농업협동조합중앙회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3호만 적용하고,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 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・영어자금・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5. (생 략) ② (생략) 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

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

개 정 아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--------- 2024년 12월 31일 -----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(「농업 협동조합법」 제161조의2에 따

회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(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<단서 신설>

1.	$\sim$	3.	(생	략)

② ~ ⑤ (생 략)

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를
포함한다),
7-1
경
감한다. <u>다만</u> , 농업협동조합중
앙회는 제3호만 적용하고, 농협
경제지주회사는 제1호 및 제2
호만 적용한다.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